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12

발의연월일: 2024. 7. 5.

발 의 자: 안규백·정진욱·문대림

김준혁 • 안도걸 • 권칠승

이건대 • 박홍배 • 양부남

문금주・조 국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해당 법률에 규정된 연명의료중단은 임종과정에서 치료효과 없이 단순히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으 로, 소극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말기 환자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현실을 충분 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82%가 조력존엄사 입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말기환자들이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선택권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이러한 의견은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23년 안규백 국회의원실이 KBS와 서울신문과 공동으로 21대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회의원 100명 중 87명이조력존엄사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음.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조력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음.

조력존엄사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임.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특히, 의사의 조력을 통해 환자가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고려한 존엄한 죽음을 보장함.

조력존엄사 제도는 단순한 생명의 중단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의 해 방과 환자의 마지막 선택을 존중하는 인도적인 접근임. 많은 선진국에 서 이미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말기환 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음.

이에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로서 조력존엄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본인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함으로써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조력존엄사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죽음과 관련한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조력존엄사"를 조력존엄사대상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 다.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소속으로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및 제11조).
- 라. 조력존엄사대상자로서 대상자 결정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대상 자 본인이 담당의사 및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조력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 마.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자살방 조죄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15조).
- 바. 관리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과 조력존엄사심사위원 회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이 조력존엄사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22조).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조력존엄사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죽음과 관련한 자기결 정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말기환자(末期患者)"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를 말한다.
- 2.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 3. "조력존엄사대상자"란 말기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른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청이 인용된 사람을 말한다.
- 4. "조력존엄사"란 조력존엄사대상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 원칙) 조력존엄사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조력존엄사 및 그 이행에 관하여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력 존엄사와 관련하여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력존엄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조력존엄사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국가조력존엄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력존엄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조력존엄사의 제도적 확립을 위한 추진방향 및 기반조성
 - 2. 조력존엄사 남용 방지를 위한 문화 조성 및 존엄한 죽음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 3. 조력존엄사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의 시행ㆍ지원
 - 4. 제9조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 5.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지침의 개발·보급
 - 6. 조력존엄사의 이행을 돕는 의사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침의 개 발·보급

- 7. 조력존엄사에 관한 조사 · 연구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조력존엄사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국가조력존엄사위원회) ①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조력존엄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 ④ 위원은 말기환자 진료, 호스피스 및 임종과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국립조력존엄사관리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조력존엄사 및

-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조력존엄사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조력존엄사 및 그 이행의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정보수집 및 관련 통계의 산출
- 2. 외국 관련 기관과의 국제협력
- 3. 조력존엄사 시행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도·감독
- 4. 조력존엄사 절차에 관한 지침 개발
- 5. 조력존엄사 남용 방지를 위한 문화 조성 및 존엄한 죽음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 6. 조력존엄사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의 시행ㆍ지원방안 개발
- 7. 그 밖에 조력존엄사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관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조력존엄사 및 그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 1. 조력존엄사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 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
- 3.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조력존엄사 관련 상담
- 4.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종교계·법조계·윤리학계·시민단체 등의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윤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제6항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와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 ① 그 밖에 윤리위원회 및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조력존엄사대상자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조력존엄사의 이행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1조에 따른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조력존엄사대상자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말기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 서류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② 조력존엄사대상자 결정을 신청한 사람은 언제든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조력존엄사대상자 결정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철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 ① 조력존엄사대상자 해당 여부를 심의
 - · 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사위원회는 조력존엄사대상자 결정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조력존엄사대상자로 결정한다.
 - 1. 말기환자에 해당할 것
 - 2.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 3.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2.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조력존엄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윤리 분야 전문가 또는 심리 분야 전문가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수 있다.
- ⑥ 심사위원회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심사위원회에서 위임한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 및 실무위 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조력존엄사 이행의 대상) ① 담당의사는 조력존엄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력존엄사 이행을 도울 수 있다.
 - 1.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력존엄사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 2. 조력존엄사대상자 본인이 담당의사 및 전문의 2명에게 조력존엄 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② 담당의사는 조력존엄사대상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2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제13조(조력존엄사의 이행 및 담당의사의 조력) ① 담당의사는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환자가 조력존엄사를 이행하는 경우 이를 도울수 있다. 이 경우 이행을 돕는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담당의사가 조력존엄사의 이행을 돕기를 거부할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하여야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조력존엄사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담당의사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담당의사는 자신의 조력으로 조력존엄사대상자가 조력존엄사를 이행하는 경우 그 과정 및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④ 의료기관의 장은 조력존엄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이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기록의 보존)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조력존엄사를 이행한 환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조력존엄사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1.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자료·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 2. 제13조제4항에 따라 기록된 조력존엄사 이행의 결과
 - 3. 그 밖에 조력존엄사 및 그 이행에 관한 중요한 기록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5조(「형법」의 적용 배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력존엄사대상자의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 제25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리기관, 의료기관,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는 이 법에서 정한 조력존엄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7조(정보 유출 금지) 관리기관, 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조력존엄사 및 그 이행에 관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가족(이 조에서는 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조력존엄사 또는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사유가 없으면 사본을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록 열람의 범위와 절차 및 열람 거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제19조(보고·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조력 존엄사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 의 장 및 그 종사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내보여야 한다.
- ③ 등록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조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관리기관이 아니면 국립조력존엄사관리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1조(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이 법에 따른 조력존엄사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수령인 또는 연금수급자를 보험금 또는 연금급 여 지급 시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4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
 - 2. 제17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유출한 자
 - ② 제14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을 위반한 자를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력존엄사의 이행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 2. 제20조를 위반하여 국립조력존엄사관리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한 자
 -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